Deloitte.



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1 월호

COVID-19 과 관련된 의료 상품 및 활동에 대 6 한 세금 감면 연장

COVID-19 이 안정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2021 년 12 월 31 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MoF)은 규정 번호 226/PMK.03/2021(PMK-226)을 발행하여 규정 번호 239/PMK.03/2020 (규정 번호 83/PMK.03/2021 에 의해 수정됨) 및 2020 년 정부 규정 번호 9(*Tax Alert June 2020*, *Tax Alert July 2021*, 및 *Tax Info January 2021* 참조)에 의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제공된 일부 세금 감면을 2022 년 6 월까지 연장했음. PMK-226 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됨.

세금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주 및 지방 정부 보건부, 국가 및 지역 재난 관리 기관 (Badan Penanggulangan Bencana Nasional/badan penanggulangan bencana daerah));

In this issue:

- Tax reliefs for medical goods and activities related to COVID-19 pandemic to be extended
- 2. New Indonesia-Singapore tax treaty enters into force
- 3. <u>Updated regulation on preliminary</u> <u>tax refunds issued</u>

Customs Focus:

4.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on imported goods based on the Agreement on Trade Preferences among D-8 member countries

- COVID-19 환자의 위탁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및/또는
- 특정 정부 기관 / 기타 기관 또는 병원에 필수품을 (의약품, 백신 및 지원 장비, 실험 장비, 테스트 키트, 보호 장비 또는 간호 장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주 또는 지방 보건부에 통보한 기타 당사자.

부가가치세 혜택

적격 수령인이 과세 대상 필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미징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과세 대상 물품의 현지 배송은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납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PKP))가 적격 수령인에게 과세 대상 필수품(사은품 포함) 배송;
- 백신 및/또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산업 내의 기업이 COVID-19 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백신 및/또는 의약품 배송;
- 특정 정부 기관/ 기타 기관 또는 병원에 과세 대상 필수품 기부. 단, 필수품을 배송하는 PKP 가 해당 필수품을 먼저 주 또는 지방 보건부에 기부 의사를 통지해야 함. 기부된 필수품은 정부 기관/ 기타 기관 또는 병원에서 무료로 COVID-19 관리에 사용해야 함; 및
- 보건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PKP 가 COVID-19 관련 사용을 위해 제약 산업에 백신 및/또는 의약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 필수품의 현지 배송을 위해 필수품 배송자는 "PPN DITANGGUNG PEMERINTAH EKSEKUSI PMK NOMOR 226/PMK.03/2021" 표시가 스탬프된/첨부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함.

PMK-226 에 따라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필수품 구매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상기 부가세 혜택은 2022 년 1 월부터 6 월까지의 회계 기간에 적용됩니다.

제 22 조 소득세 혜택

필수품을 수입하는 적격 납세자는 수입에 대한 제 22 조 선납법인세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2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기간중의 수입에 적용됨.

다음 거래도 제 22 조 선납법인세가 면제됨:

- 적격 수령인이 COVID-19 관리 필수품 구매;
- 적격 수령인에게 COVID-19 관리 필수품을 판매;
- 보건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제약 기업이 COVID-19 와 관련된 백신 및/또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 제약 기업이 특정 고객에게 COVID-19 관련 백신 및/또는 의약품을 판매.

MoF issued PMK-226 to extend until 30 June 2022 some of the tax reliefs for medical goods and activities related to COVID-19 that have expired on 31 December 2021.

제 22 조 선납법인세 면제를 원하는 납세자는 면세 승인서를(Surat Keterangan Bebas(SKB)) 신청해야 함. 혜택은 SKB 발행일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적용됨. 납세자는 혜택에 대한 월별 집행 신고서를 그 다음 달 20 일까지 제출해야 함.

적격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제 21 조 소득세 혜택

2020 년 정부 규정 No. 9 에 따라 제공된 0%의 최종 소득세율은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적격 의료 종사자에게 계속 적용됨.

새로운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 조약 공표

2021 년 12 월 7 일에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20 년 2 월 4 일에 서명된 새로운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 조약이 2021 년 7 월 23 일부터 공표됨을 알리기 위해 국세청 훈령 No.50/PJ/2021(SE-50)을 공표함.

SE-50 은 새로운 조세조약이 아래 사항관련 유효함을 확인함:

- 원천징수세: 2022 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령하거나 파생된 소득;
- 기타 소득세: 2022 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 및
- 정보 교환 요청: 2021 년 7월 23일 또는 그 이후 요청분.

새로운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0년에 서명된 이전 SE-21/PJ/2021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 조약은 취소됨.

다른 변경 사항 중에서 새로운 조세조약은 로열티 및 지점이윤 원천징수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특정 자본 이득에 대해 원천국가에서의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포함함. 자세한 내용은 <u>Tax</u> Alert February 2020, Tax Info May 2021, 및 Tax Info June 2021 참조.

조기 환급 규정 업데이트 공표

2021 년 12월 29일 재무부 장관은 이전에 재무부 장관령 No.39/PMK.03/2018 (재무부 장관령 No.117/PMK.03/2019 에 의해 수정됨) (PMK-39)에 의해 규정되었던 조기환급 시행령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규정 No.209/PMK.03/2021(PMK-209)을 공표함. (*Tax Info May 2018* 및 *Tax Info September 2019* 참조). PMK-209 는 2022 년 1월 1일 공표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된 조기 환급에 적용됨.

PMK-209 의 "모범" 납세자는 공인 회계사 또는 정부 금융 감독 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수감 및 "적정" 의견을 획득하여 함 (모범 납세자는 통상 아래의 납세자임: (i) 세무신고서 적시 제출 (ii) 분할 납부 또는 연기가 승인된 미납세금 외 일체 미납세금이 없음; (iii) 3 년 연속 공인 회계사 또는 정부 금융 감독 기관으로부터 적정 회계감사 의견을 받음; 및 (iv) 과거 5 년간 조세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음). 세무서는 조기

SE-50 confirms that the new Indonesia—Singapore tax treaty entered into force as from 23 July 2021.

A golden taxpayer must now have its financial statements audited with an unqualified opinion as part of the requirement to apply for preliminary tax refund. 환급 승인 검토를 위해 적정 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함. 이 사항은 PMK-39 에 없던 신규 조항임.

또한 PMK-209 는 조기환급 가능 부가세 환급 금액을 IDR 50 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전 PMK-39 규정에는 IDR 10 억 이었음).



관세 포커스

D-8 회원국간 무역특혜협정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국제 무역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MoF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기타 8 개 개발도상(D-8) 회원국 (즉 방글라데시, 이란, 말레이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 No.203/PMK.04/2021(PMK-203)을 발행함.

PMK-203 의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

관세구역 외, 보세장치장 (TPB), 보세물류센터 (PLB), 자유무역지역, 특별 경제 구역 (SEZs) 등 관세 지역 내 기타 장소(TLDDP)로 수입 세관 신고를 활용한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에 관한 규정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원산지 기준	배송 기준
a.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또는 (ii) 생산 공정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결과에 현지 가치 함량 또는 지역 가치 함량이 공장인도조건(EXW)의 최소 40%를 포함하는 상품을 포함하여 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은 물품.	a. 배송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원산지 증명서(SKA) Form D-8을 발급한 회원국에서 직접 세관으로 배송된 수입품; (ii)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 이외 다른 회원국을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 또는 (iii) 회원국 이외의 국가를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
b. 위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원산지 상품은 생산 공정이 수행되는 국가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b. 수입품은 수송/환적 또는 임시 보관 목적 경우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수출 회원국이 아닌 하나 이상의 국가를 통해 배송될 수 있음: (i) 지리적인 이유; (ii) 경유지 국가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음; (iii) 상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선적, 하역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이외의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음. 환적 또는 임시 보관 활동에서 수입자는 선하증권 또는회원국 이외의 국가 세관 당국의 기타 문서/정보 또는 환적이나 일시보관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

PMK-203 은 다음과 같은 SKA Form D-8 발급 요구 사항을 규제함:

- a. 영어로 발행됨;
- b. 규정에 따라 SKA Form D-8 과 형식을 사용함;
- c. SKA 에 두개 이상의 상품 설명이 포함된 경우 상품 설명에 대한 상품 원산지 기준을 명시함;
- d. 선적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3 일 이전 또는 당일 또는 최대 3 일 이내에 발행됨.

3. 특혜관세의 제출·검토·부과

또한 PMK-203 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SKA Form D-8 제출 검토를 규정함:

- 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상품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을 수행해야함:
 - (i) 원본 SKA Form D-8 제출;
 - (ii) 물품 수입신고서에 시설코드를 정확히 기재함; 또한
 - (iii) 상품 수입신고서에 참조번호 및 SKA Form D-8 작성 날짜를 기재함
- b.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의 검토 결과 수입상품이 상품 원산지 규정에 관한 하나 이상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SKA Form D-8 은 거절되며 수입 상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입 관세율이 적용됨 (최혜국 / MFN).
- c. SKA Form D-8 이 여러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한 유형의 상품이 거절됨으로 인해 상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가 취소되지 않음.
- d. 본선인도가격이 USD 200 를 초과하지 않는 회원국 출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SKA Form D-8 을 첨부하지 않고 PIB 문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 (i) SKA Form D-8 제출의무 회피를 수입품이 아님; 및
 - (ii) 상품이 수출 회원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설명하는 수출자의 신고서에 의해 입증됨

4. 경과규정

PMK-203 발효 이전 세관 신고 등록 번호 및 날짜를 회득 했고 TPB, PLB, 자유지역 또는 SEZ 에서 TLDDP로 반출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본 SKA Form D-8 이 규정 발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제출되면 PMK-203 발효일 부터 적용되는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됨.

PMK-203 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됨.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2 Deloitte Touche Solutions